

## 안양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침

제정 2019. 4. 10 예규 제63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안양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안양시 공공체육시설에 적용한다.

제3조(감면 세부내용) 「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」 제11조, 「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세부내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사용료 감면 심의위원회)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체육시설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으로 한다.

1. 체육시설 업무담당과장
2. 공원관리 업무담당과장
3. 안양시체육회 사무국장
4. 안양도시공사 체육시설 관리부장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1. 별표 2의 안양시체육회, 안양시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하지 않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대회의 사용료 감면 여부
2. 제3조의 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,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회의 사용료 감면 여부와 감면율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안양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침

부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**전액 감면 세부내용**(제3조 관련)

번호	구 분	적용대상
1	국가·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스포츠데이(Sports Day)</li> <li>• 어린이날 행사(대상: 13세 이하 어린이)</li> <li>• 수능수험생 대상 행사</li> </ul>
2	국제대회(국가대항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대항전 경기(한·중 청소년 축구전, 덴소컵 한·일 축구대회 등)</li> </ul>
3	공무원체육대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도·시 공무원 친선대회(지방의원 포함)</li> </ul>
4	안양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주최 대회(종목단체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장·시의회의장·국회의원기 대회</li> <li>• 종목단체 회장기 대회</li> </ul>
5	경기도교육청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주최·주관 대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초·중·고교대회</li> <li>•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기 대회</li> </ul>
6	유소년대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 단위 이상 대회(유소년 농구대회, 안양유소년클럽 체육대회, KBL총재배 어린이농구대회 등)</li> </ul>
7	시를 연고로 하나 시장이 구단주가 아닌 프로스포츠단 및 실업팀의 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 연고 프로스포츠단 및 실업팀의 체력·전술 훈련</li> </ul>

가. 적용대상 대회 및 행사 명칭의 “기(旗)”에는 “배(盃)” 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

나. 4번부터 7번에 해당하는 대회 및 행사의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료는 징수한다.

[별표 2]

100분의 50 감면 세부내용(제3조 관련)

번호	구 분	적용대상
1	국제경기(친선경기)	• “전액감면”의 국가대항전을 제외한 국제적 규모의 경기
2	안양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주최·주관대회(종목단체 포함)	• 리그전 대회 및 기타대회 (단, 연 1회로 제한)
3	대학교 주최·주관대회	• 관내 대학교의 총장기대회
4	어린이 참여대회	• “전액감면”의 유소년대회를 제외한 어린이가 참여하는 대회
5	학교운동부 훈련	• 관내 초·중·고, 대학운동부 선수 훈련
6	안양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되지 않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주최·주관대회	•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는 단체의 신청자격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면 여부 결정(단, 자체대회는 제외)

가. 적용대상 대회 및 행사 명칭의 “기(旗)”에는 “배(盃)” 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

나. 부속시설 사용료는 징수한다.